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1999. 12. 1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9년 11월 24일 마포구청장 제출
- 나. 회부일자 : 1999년 12월 13일
- 다. 상정일자 : 제67회 정기회 제1차 위원회 ('99. 12. 13.) 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 제안설명자 : 기획재정국장 염을렬

가. 제안사유

- 지방자치법 제1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출

나. 주요골자

-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참조
- 예산규모

(단위: 천원)

구 분	'99.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기 정 예 산	증 (Δ) 감	비 고
총 계	148,042,252	132,926,086	15,117,166	
일반회계	125,137,429	110,020,263	15,117,166	
특별회계	22,905,823	22,905,823	0	
의료보호기금	5,946,186	5,946,186	0	
주차장	16,959,637	16,959,637	0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박 관 수)

-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마포구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2차에 걸쳐 간주 처리 된 15억 7,309만 5천원이 포함된 기정예산액 1,100억 2,026만 3천원보다 151억 1,716만 6천원이 증액된 1,251억 3,742만 9천원으로 편성되었음.
- 본 추경예산안의 세입재원은 '98년도 결산결과에 의한 순세계잉여금 234억 5,615만 8천원 중에서 본예산에 기편성된 90억원과 제1회 추경예산에서 재정운용상 열악한 구재정을 보전하기 위한 방편으로 분할 편성하였던 59억 5,615만 8천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 85억원과 '99년도 보통조정교부금 추가분으로 확정내시된 66억 1,716만 6천원이 되겠으며, 본 추경 세출예산안에서는 전액 예비비에 편성된 것으로 사료되고,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에서는 14억 1,284만 9천원이 간주처리되어 59억 4,618만 6천원으로 편성되었음.
-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서는 '99년도 본예산 서무관리분야에 기편성된 시비 보조사업인 새주소부여사업비중 서울시 보조금 5억원과 마포 구비 4억 6,166만 7천원은 연내 집행이 곤란하여 본 제2회 추경안에 첨부된 내용과 같이 명시이월하여 2000년도에 사용할 수 있도록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 음

5. 토론요지 : 없 음

6. 심사결과 : 원 안 의 결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8. 기타사항 : 없 음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99. 11.

제 출 자 : 마포구청장

1. 제출사유

- 지방자치법 제1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출

2. 주요골자

-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 별첨
- 예산규모

(단위: 천원)

구분	'99.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기정예산	증(△)감	비고
총계	148,043,252	132,926,086	15,117,166	
일반회계	125,137,429	110,020,263	15,117,166	
특별회계	22,905,823	22,905,823	0	
의료보호기금	5,946,186	5,946,186	0	
주차장	16,959,637	16,959,637	0	

3. 제출서류

-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 별첨

일반회계 간주처리

◎ 제 1 회 추 경 108,447,168천원

◎ 간 주 처 리 1,573,095천원

○ 제 23 차 간주처리 ('99. 08. 23) 1,234,315천원

○ 제 24 차 간주처리 ('99. 09. 15) 338,780천원

계 110,020,263 천원

의료보호 특별회계 간주처리

◎ 본 예 산 4,533,337천원

◎ 간 주 처 리 1,412,849천원

○ 제 1 차 간주처리 ('99. 08. 23) 1,412,849천원

계 5,946,186 천원

예 산 중 직

제1조 1999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 : 천원)

회 계 별	세입·세출 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일 반 회 계	125,137,429 천원	3,754,122천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5,946,186 천원	0
주 차 장 특별회계	16,959,637 천원	0

제2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과 같다.

제3조 1999년도 채무부담행위는 없다.

제4조 1999년도 지방채발행 없다.

제5조 1999년도 명시이월 사업은 별첨 "명시이월사업조서"와 같다.

제6조 1999년도 계속비 사업은 없다.

제7조 (예산이용) 다음 경비의 부족이 생겼을 때에는 지방재정법 제38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타과목에서 이용할 수 있다.

(단,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4조 제1항의 1, 2, 4호 제외)

1. 공무원 봉급 (상여금 및 정액수당 등)
2. 공무원 연금부담 및 의료보험 부담금
3. 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4. 공공요금
5. 제세 공과금, 배상금
6. 차입금의 원리금
7. 재해대책 및 복구비

제9조 (간주처리) 회계년도 중에 내시되는 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 교부금은 예산 승인된 것으로 간주처리하고 의회에 사후보고 한다.

일반회계 세입 관별 조서

(단위:천원)

과 목	예 산 액	기 정 예 산 액	증 (△) 감
합 계	125,137,429	110,020,263	15,117,166
100 지방세 수입	24,293,165	24,293,165	
110 지방세	24,293,165	24,293,165	
200 세외수입	38,266,738	29,766,738	8,500,000
210 경상적세외수입	10,591,123	10,591,123	
220 임시적세외수입	27,675,615	19,175,615	8,500,000
500 조정교부금	43,491,429	36,874,263	6,617,166
510 조정교부금	43,491,429	36,874,263	6,617,166
600 보조금	19,086,097	19,086,097	
610 국고보조금	3,333,652	3,333,652	
620 시·도비보조금	15,752,445	15,752,445	

일반회계 세입예산 특별 조서

(단위:천원)

예산 과 목				예산액	기정예산액	증(△)감	
장	관	항	목				
200 세 외 수 입				38,266,738	29,766,738	8,500,000	
	220 임 시 적 세외수입			27,675,615	19,175,615	8,500,000	
		222 순 세 계 잉 여 금			23,456,158	14,956,158	8,500,000
				222-01 순 세 계 잉 여 금		23,456,158	14,956,158
500 조 정 교부금				43,491,429	36,874,263	6,617,166	
	510 조 정 교 부 금			43,491,429	36,874,263	6,617,166	
		511 조 정 교 부 금			43,491,429	36,874,263	6,617,166
				511-01 조 정 교 부 금		43,491,429	36,874,263

세 입 예 산

(단위:천원)

예 산 과 목				예 산 액	기정예산액	증(△)감	신 출 기 초	
장	관	항	목					
200	세 외 수입			38,266,738	29,766,738	8,500,000		
		220	임 시 적			27,675,615	19,175,615	8,500,000
			세외수입			23,456,158	14,956,158	8,500,000
			222	순 세 계 잉 여 금	222-01 순 세 계 잉 여 금	23,456,158	14,956,158	8,500,000
500	조 정 교 부 금			43,491,429	36,874,263	6,617,166		
		510	조 정			43,491,429	36,874,263	6,617,166
			교 부			43,491,429	36,874,263	6,617,166
			511	조 정 교 부 금	511-01 조 정 교 부 금	43,491,429	36,874,263	6,617,166

일반회계 세출 관별조서

(단위:천원)

장 관 별	예 산 액	기정예산액	증 (△) 감
합 계	125,137,429	110,020,263	15,117,166
1000 일반 행정 비	53,448,232	53,448,232	
1100 입법 및 선거관계	1,382,980	1,382,980	
1200 일반 행정 비	52,065,252	52,065,252	
2000 사회 개발 비	42,489,023	42,489,023	
2200 보건및생활환경개선	17,647,435	17,647,435	
2300 사회 보장 비	23,824,558	23,824,558	
2400 주택및지역사회개발비	1,017,030	1,017,030	
3000 경제 개발 비	12,096,310	12,096,310	
3300국토 자원 보존 개발비	11,802,668	11,802,668	
3400 교 통 관 리	293,642	293,642	
4000 민 방 위 비	159,495	159,495	
4100 민 방 위 관 리	159,495	159,495	
5000 지원 및 기타 경비	16,944,369	1,827,203	15,117,166
5400 예 비 비	16,944,369	1,827,203	15,117,166

일반회계 세출예산 목별조서

(단위:천원)

예 산 과 목						예 산 액	기정예산액	증(△)감
관	항	세항	세세항	목	세목			
5000						16,944,369	1,827,203	15,117,166
지원및기타경비								
5400						16,944,369	1,827,203	15,117,166
예비비								
5410								
예비비								
400								
예비비								
410								
예비비								
801								
예비비								

일반회계 세출예산

(단위:천원)

예 산 과 목					예산액	기정예산액	증(△)감	산 출 기 초
관	항	세항	세세항	목				
5400					16,944,369	1,827,203	15,117,166	
예비비								
5410					16,944,369	1,827,203	15,117,166	
예비비								
5411					16,944,369	1,827,203	15,117,166	
예비비								
400					16,944,369	1,827,203	15,117,166	
예비비등								
410					16,944,369	1,827,203	15,117,166	
예비비								
801					16,944,369	1,827,203	15,117,166	
예비비								
					16,944,369	1,827,203	15,117,166	○ 예비비 15,117,166,000원

명시 이월 사업 조서

(단위:천원)

사업명	과 목			예산액	이월액	사 유
	항	세 항	목			
계				984,367	961,667	◎ 본사업은 시비보조사업으로서 정부시범 사업으로 시행한 강남구의 경우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 서울시에 서 시정개발연구원의 용역, 새주소 시스템에 대한 업무 재설계를 통해 문제점을 보완하면서, 당초 계획된 일정 보다 장기간 소요되어 연내 집행이 곤란한 서울시 보조 금 500,000천원과 구 사업비 461,667천원을 이월조치
새주소부여사업	사무관리	보조사업	일반운영비	815,367	815,367	
			연구개발비	169,000	146,300	